질 의 회 신

❖ …… 아래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관계조항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한 법무부의 질의 회신임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❖

질의요지

법인체인 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(안전상의 조치) 및 제18조(보건상의 조치)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,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임명된 공장장이 실제로 공장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동법 제44조와 제48조(양벌규정)에 따라 공장장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법인의 형사책임 귀속범위

회 답

법 제17조, 제18조의 조치를 위반한 행위자는 법 제48조에 의하여 법 제44조에 규정된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법인은 법 제48조의 양벌규정에 의거 벌금형으로 처벌 가능함.

이 유

(1) 동법 제17조제1항은 "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한다"고 규정하고, 동법 제2조제3호는 "사업주라 함은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"고 규정하고 있어 법문상"사업주"가 아니면 법 제17조 위반의 행위주체가 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

(2) 법 제44조는 "법 제17조,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"고 규정하고, 동법 제48조는 양벌규정으로서"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44조 내지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"고 규정하고 있는 바,

(3) 본건의 경우 사실행위자가 공장장인데 공장장은 법 제17조의 행위주체인 사업주가 아니며 법 제44조 위반의 전제가 되는 법 제17조의 명령은 사업주에 대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아닌 공장장등 종업원은 법 제44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법 제48조가 "…종업원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44조 내지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는 벌금형을 과한 다"라고 규정한 "행위자를 벌하는 외에" 라는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사업주가 아닌 종업원등 사실행위자가 처벌되는 것임.